

2 관련 고시

가. 교육부고시 제2017-126호(2017.8.30.)

유치원 및 초·중·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시행 2018.3.1.] [교육부고시 제2017-126호, 2017.8.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임시교원양성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등에서 전공(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포함) 및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예정자 전체에게 적용한다.

제3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유치원 교사 및 중등·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과교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교육영역을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 대학의 형편에 따라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으로 할 수 있으며, '교직'으로 이수한 과목을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에는 표시과목별로 기본이수과목으로 고시된 '교과 교육론'을 포함하여,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등을 대학별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논리 및 논술' 과목은 표시과목별로나 계열별 또는 범교과적으로 논술교육을 하거나, 학교급에 따라 '창의성 발달 지도' 등에 중점을 두어 교수요목을 구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은 동일 계열 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일 계열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은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사회' (통합사회, 일반사회, 지리, 역사, 도덕·윤리), '과학' (통합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환경' (환경, 환경공업), '공업'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 건설, 냉동, 세라믹, 인쇄), '상업' (상업, 정보·컴퓨터), '농업'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수산·해운' (수산·해양, 항해, 기관, 냉동, 식품가공)으로 한다.

⑥ 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제4조(기본이수과목의 이수) 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교원양성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또는 분야)이다.

② 교사의 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별표 3]과 같다.

③ 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별표 3]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이수과목은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으로 한다.

④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특수학교(공통)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과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의 표시과목 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초등학교 전공과목의 이수) ① 초등학교 전공과목에는 반드시 예·체능 실기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전공과목 이수기준 외에 18학점 이상의 세부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교직소양과목 중 ‘특수교육학 개론’은 교수요목에 ‘영재교육’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직실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진로교육’, ‘학교·학급경영’, ‘학사·인사·행정실무’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생활지도’, ‘학생정서행동발달’ 등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로 한다.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서관법」 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4.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

⑦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⑧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 을 면제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⑨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 각 호의 기관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⑩ 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과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직과목을 '전공' 으로 개설하여 이수하더라도 교직과목으로 인정한다.

제7조(성적기준) ①<삭제>

- ② 성적기준의 적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당해 대학의 성적표에 명시된 전체 최종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 ③ 편입 및 재입학으로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한 성적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④ 제2항의 규정 이외에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제8조(양성기관별 무시험검정 기준의 마련)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4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국가 수준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외에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이란, 외국어 표시과목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 요구 등을 의미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마련 여부 및 그 시행 시기는 당해 기관에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표시)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대한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의 기준은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에는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표시과목이 없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특수학교(초등)교사가 무시험검정 기준일 현재 임용된 교사자격 외에 별도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에 해당 전공에 승인된 표시과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② 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④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시 교육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동일한 학교급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되, 부전공 표시과목은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⑤ 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은 제3조제4항 및 [별표 1]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학점 및 기본이수과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또는 표시과목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 관련학과라 함은 대학·산업대학에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부여하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 30학점 이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관련 전공을 둘 이상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

제11조(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① 연계전공(통합과학, 통합사회, 기술·가정, 도덕·윤리) 이수자의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나머지 35학점은 타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을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761호, 2000. 1.28)에 따라 통합된 표시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은 통합 전의 표시과목 전공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③ 동일계열의 표시과목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교과교육영역 포함)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① 교원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임의로 과목명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과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이중 1개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개의 과목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한다.

③ 고시된 교직과목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1개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개설하거나,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동 대학 내 학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126호, 2017.8.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의 개정 규정,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 이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 규정,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이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18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18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 다만, 별표3의 제2호 중 '기계' 와 '재료'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개정사항은 2017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와 입학자가 재학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를 적용한다.

1. 1978~198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414호(1978.2.25.)
2. 1983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2-2호(1982.6.23.)
3. 1984~199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3-11호(1983.11.9.)
4. 1995~1997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4-7호(1994.9.26.)
5. 1998~199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7-11호(1997.12.9.)
6. 2000~200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0-1호(2000.1.28.)
7. 2005~2008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4-5호(2004.6.9.)
8. 200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29호(2009.7.13.) 단, 2008-119호(2008.8.1.)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인정한다.
9. 2010년~201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1-15호(2011.3.2.)
10. 2013년~201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2-27호(2012.11.21.)
11. 2015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4-48호(2014.9.2.)
12. 2016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5-73호(2015.10.1.)
13. 2017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6-106호(2016.12.23.)

[별표 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1.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국어 Korean Language	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국어교육론 (2)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국문학개론, 국문학사 (4)문학교육론(소설교육론 또는 시가교육론, 또는 희곡교육론, 또는 수필교육론) (5)의사소통교육론(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1)-(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도덕·윤리 Ethics	(국민)윤리교육, 철학,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도덕·윤리교육론 (2)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윤리사상, 윤리고전강독, 응용윤리(또는 사회윤리), 윤리와 논술 (3)민주주의론, 통일교육론, 시민교육론, 도덕심리학(또는 발달심리학), 도덕사회학	(1)분야에서 1과목, (2)-(3)분야 중 각 분야에서 3과목 이상 이수
통합사회 Integrated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 지리교육, 역사교육, (국민)윤리교육, 철학, 교육학, 통합사회 교육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통합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는 사회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인간과사회(문화인류학) (3)한국사개론, 동양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학개론, 문화사(한국문화사, 동양문화사, 서양문화사) (4)자연지리학(개론), 인문지리학(개론), 한국지리, 세계지리, 지도학 (5) 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윤리사상, 응용윤리(사회윤리)	(1)분야에서 1과목, (2)-(5)분야 중 각 분야에서 2과목 이상 이수(주전공 표시과목 해당 분야 제외)
일반사회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일반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는 문화인류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사회과학방법론, 인간과사회(또는 사회학), 인간과행정(또는 행정학), 시민교육과사회윤리	
지리 Geography	지리교육, 지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지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자연지리학, 인문지리학, 도시지리학, 경제지리학, 문화지리학, 지형학, 기후학, 환경지리학, 한국지리, 세계지리(또는 지역지리), 지도학(또는 지리정보론), 인구지리학, 역사지리학, 촌락지리학, 정치지리학, 사회지리학, 자원지리학	
역사 History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역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역사학방법론(역사학개론, 사료강독) (3)분야사(한국근현대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사상·문화사, 한국대외교류사, 동서교류사, 사학사) (4)한국사(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5)세계사(동아시아 고대사, 동아시아 중세사, 동아시아 근세사, 동아시아 근대사, 서양고대사, 서양중세사, 서양근대사, 인도·동남아시아사, 서남아시아·아프리카사, 아메리카사) (6)현대사(한국현대사, 동아시아현대사, 서양현대사, 20세기현대사, 현대세계와한국)	(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수학 Mathematics	수학교육, 수학, 전산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 해석학, 선형대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기하학일반, 위상수학, 확률 및 통계, 조합 및 그래프 이론	
통합과학 Integrated Science	과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통합과학교육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통합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2)일반물리학 및 실험, 전자기학, 현대물리학 (3)일반화학 및 실험, 무기화학, 유기화학 (4)일반생물학 및 실험, 세포학, 분자생물학 (5)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지질학, 대기과학	(1)분야에서 1과목, (2)-(5)분야 중 각 분야에서 2과목 이상 이수(주전공 표시과목 해당 분야 제외)
물리 Physics	과학교육, 물리교육, 물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물리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역학, 양자역학, 전자기학, 열 및 통계물리, 파동 및 광학, 전산물리, 현대물리학, 물리교육실험	
화학 Chemistry	과학교육, 화학교육, 화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화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물리화학, 물리화학 실험, 유기화학, 유기화학 실험, 무기화학, 무기화학 실험, 분석화학, 분석화학 실험	
생물 Biology	과학교육, 생물교육, 생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생명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세포학, 발생학, 식물생리학, 동물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태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물화학	
지구과학 Earth Science	과학교육, 지구과학교육, 지구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지구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지질학, 천문학, 대기과학, 해양학, 지구물리학, 지구환경과학, 자연재해와 에너지 자원	
기술 Technology	기술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기술교육론 (2)제조기술(제도, 기계) (3)건설기술(토목, 건축) (4)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공학) (5)정보통신기술(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6)생명기술(재배사육, 생명기술기초,)	(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가정 Home Economics	가정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가정교육론 (2)영양학, 식품과 조리 (3)의복재료와 관리, 의복디자인과 구성 (4)주거학, 실내디자인 (5)가정경영, 소비자학 (6)아동학, 가족학 (7)가정생활과 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 진로	(1)-(7)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기술·가정 Technology & Home Economics	기술교육, 가정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기술·가정교육론(또는 기술교육론, 또는 가정교육론) (2)①제조기술(제도, 기계), ②건설기술(토목, 건축), ③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공학), ④통신기술(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⑤생명기술(재배사육, 생명기술기초) (3)①영양학, 식품과 조리, ②의복재료와 관리, 의복디자인과 구성, ③주거학, 실내디자인, ④가정경영, 소비자학, ⑤가족학, 아동학, ⑥가정생활과 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 진로	(1)분야에서 1과목, (2)의 ①~⑤와 (3)의 ①~⑥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하되, ※가정 전공은 기술분야에서, 기술전공은 가정분야에서 각각 35학점 이상 이수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체육 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 체육학, 무용(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체육교육론, 체육사·철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 평가, 건강교육, 무용교육, 운동실기, 특수체육, 운동학습 및 심리(또는 스포츠심리 및 운동학습), 여가레크리에이션,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음악 Music	음악교육, 음악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음악교육론, 음악(국악)교수법, 전공실기, 국악실기, 시창·청음, 국악가창지도법, 합창·합주지도법, 국악개론, 국악사, 서양음악사, 화성법, 음악분석및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	
미술 Fine Arts	미술교육, 미술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미술교육론, 현대미술론, 소묘, 색채학,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판화, 표현기법, 서예, 영상(또는 애니메이션), 미술사(한국, 동양, 서양미술사 포함)	
영어 English	영어교육, 영어영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또는 외국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또는 영어문법지도법), 영어회화(또는 실용영어, 또는 영어말하기지도법), 영어작문(또는 영어쓰기지도법), 영어독해(또는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음성음운론, 영미문화	
독일어 German	독어교육, 독어독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독일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독일어학개론, 독일어권문학개론, 독일어문법, 독일어회화, 독일어강독, 독일어작문, 독일어권문화, 독일문학사	
프랑스어 French	불어교육, 불어불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프랑스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프랑스어학개론,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강독,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어발음연습	
스페인어 Spanish	스페인어교육, 서어서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스페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스페인어학개론, 스페인어권문학개론, 스페인어문법, 스페인어회화, 스페인어강독, 스페인어작문, 스페인어권문화	
중국어 Chinese	중국어교육, 중어중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중국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중국어학개론, 중국문학개론, 중국어문법, 중국어회화, 중국어작문, 중국어강독, 한문강독, 중국어권문화	
일본어 Japanese	일어교육, 일어일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일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일본어학개론, 일본문학개론, 일본어문법, 일본어회화, 일본어작문, 일본어강독, 일본문화	
러시아어 Russian	러시아어교육, 노어노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러시아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러시아어학개론, 러시아문학개론, 러시아어문법, 러시아어회화, 러시아어작문, 러시아어강독, 러시아문화	
아랍어 Arabic	아랍어교육, 아랍어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아랍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아랍어학개론, 아랍문학개론, 아랍어문법, 아랍어회화, 아랍어작문, 아랍어강독, 아랍문화, 아랍어구어체연구	
베트남어 Vietnamese	베트남어교육, 베트남어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베트남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베트남어학개론, 베트남문학개론, 베트남어문법, 베트남어회화, 베트남어작문, 베트남어강독, 베트남문화	
한문 Chinese Characters	한문교육, 한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한문교육론, 한문학개론, 한문문법, 한문학사, 경서강독, 한문국역연습, 한시선독, 한문소설선독, 역대산문선독, 문자학개론	

자격종별/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특수학교 (초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Elementary)	초등특수교육과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 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 컴퓨터, 통합교과,	특수교육영역(공 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기 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학교 (중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Secondary)	중등특수교육과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특수교육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중등 표시과목별(직업교 육/이료/재활복지 제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일반 중등학교 표시과 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을 적용함	
특수학교 (중등) 직업교육 Special Vocational Education	직업특수교육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직업재활개론, 직업평가, 직업재활상담, 재활정책론, 재활실습, 전환교육, 직업과진로개발, 직업적응훈련, 보호및지원고용,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특수 교육교육과정의 직업교과지도론	
특수학교 (중등) 이료 Oriental Physiotherapy Education	이료와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해부·생리(실습), 병리, 한방(실습), 보건, 안마·마사 지·지압 및 실습, 침구 및 실습, 진단(실습), 전기치료 및 실습, 이료 임상 및 실습	
특수학교 (중등) 재활복지 Rehabilitation & Welfare	특수교육, 물리치료학, 재활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특수교육학, 지적장애학생교육, 지체장애학생교육, 학 습장애학생교육,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감각장애학 생교육, 특수교육공학	

4.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그 밖의 교사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유치원 정교사(2급) Kindergarten Teacher	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 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 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 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유아안전교육	
초등학교 정교사(2급) Elementary Teacher	초등교육과(전공)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초등안전교육	※초등실과 과목에 는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초등컴퓨터 과목은 소프트웨어기초소 양, 프로그래밍, 알 고리즘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 운영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보건교사 (2급) School Health Teacher	간호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보건교육론,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상담이론과실제, 기초건강과학, 건강사정및실습, 학교보건및실습, 아동 간호학및실습, 성인간호학및실습, 정신간호학및실습, 지 역사회간호학및실습, 응급간호학및실습, 모성간호 학및실습	학교보건및실습과 목에 학교안전교 육관련 내용이 포 함되도록 할 것
사서교사 (2급) School Librarian Teacher	문헌정보교육, 문헌정 보학, 도서관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 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체론	
영양교사 (2급) School Nutrition Teacher	영양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2)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3)단체급식 및 실습, 식품위생학 (4)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5)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	(1)에서 1과목, (2),(3)에서 각 2 과목 이상 (4),(5)에서 각 1 과목 이상
전문상담 교사(2급) School Counselor	상담·심리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상담, 집 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심 리치료(또는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청소년심 리, 상담실습, 직업교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학 습심리학, 이상심리학	

5. 실기교사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농업계 (9개)	축산 Livestock Farming	축산과, 낙농과, 사료과	축산일반실습, 사료재배 및 사양실습, 축산가공실습	
	잠업 Sericulture	잠업과	양잠일반실습, 작물보호실습, 농업경 영실습	
	원예 Horticulture	원예과	원예일반실습, 작물보호실습, 농업경 영실습	
	임업 Forestry	임업과, 임산공업과	사방실습, 조림실습, 임산가공실습	
	조경 Landscape Architecture	조경과	조경설계제도실습, 조경재료실습, 조 경환경 및 보호실습	
	농업기계 Agricultural Machinery	농업기계과	농업공작실습, 농업기계실습, 농기계 관리실습	
	농업토목 Agricultural Civil Engineering	농업토목과	토목재료 및 시공실습, 농지조성실습, 농지측량실습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식품제조과, 식품가 공과, 식품공업과, 수 산가공과	식품제조 및 관리실습, 식품화학실습, 식품위생실습	
	수의 Veterinary Medicine	수의학과	가축생리 및 위생실습, 가축질병실습, 가축번식실습	